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洪 起 斗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행정사무관〉

동력자원부는 지난 8월 30일 석유사업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 취지는 석유소비증가 및 소비구조 고급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석유산업관련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석유산업의 대외 개방화에 대비하여 산유국 및 다국적 석유기업의 비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정부가 왜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 배경

이번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시장의 대외개방과 민간 자율성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국민경제규모의 확대 및 경제구조의 다원화에 따라 정부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과 역기능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90년도에 들어와 세간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우루과이아운드 서비스 협상의 연내 타결 전망등이 급속한 개방화를 촉구하게 됨에 따라 과거의 점진적·단계적 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는 이제 급속한 국제화와 개방화의 소용돌이속에 파묻히게 되었고, GATT의 서비스협정체결 전망과 '92년 자본자유화 계획에 따라 산유국 및 다국적 석유기업의 석유유통부문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90년 8월에 들어서면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라 페르시아만에 전운이 감돌게 되면서 국제 원유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한 정부의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급박하게 대두되었다.

물론 그동안 석유사업기금등을 활용하여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왔지만 이번 이라크-쿠웨이트 사태로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에서는 석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제도적 대응책으로서 석유수출입업등록제, 수출입승인제, 저장 및 비축의무 부과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자율성의 확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석유정책시설의 신고제, 품질관리의 강화, 상표표시제도등을 추진하고,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비축사업 및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수급계획에 포함시키고, 석유저장능력과 보유의무부과등 민간비축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유가상승시에도 비축 및 유전개발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조성등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정부비축 및 유전개발 추진 근거 규정(제3조)

현행 석유사업법 제3조에 보면 동력자원부장관은 당해년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해지는 사항은 석유의 수요량, 공급량, 생산량, 수입량, 정제시설, 처리능력, 기타 수급에 관한 주요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 ① 정부보유 석유비축시설 및 비축량,
- ②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을 추가하여 비축과 개발에 대한 계획수립추진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근거를 규정하였다.

(2) 석유정제시설 및 시설개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제7조)

석유사업법 제7조에 의하면 석유정제업자의 정제시설 신설, 개조시 동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압증류시설을 제외한 증설이나 시설개조는 신고만 하면 된다.

즉 정제시설의 신설 및 상압증류시설 증설은 허가제이고 나머지는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유류소 비구조고도화 추세에 맞춰 업계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상압증류시설이 여전히 허가제로 남아있는 것은 비축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3) 석유수출입업 등록제의 도입(제11조)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석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우루파이라운드협상 결과 외국업자가 본격적으로 상륙할 것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시켰는데, 그 이유는 외국 수입업자등이 가격이 유리할 때는 수입판매에 열을 올리다가 여전히 불리해져 철수해 버릴 경우 국내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장능력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수출입업 등록을 허위로 한 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등도 또한 같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4) 석유의 수출입 승인(제16조)

개정안은 원유·천연가스에만 적용하던 승인제를 석유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등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석유수입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석유 수입에 대해 원유와 동일한 규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승인을 함에 있어 석유수출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별적인 승인에 갈음하여 수출입물량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때 승인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계약과 실제 수출입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승인의 유효기간을 적절히 규제코자 한 것이다.

또한 석유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석유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 신고 및 승인권한의 위탁시 수탁기관의 비용 보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5)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 부과(제16조의 2)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 부과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는데, 이는 석유수입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석유저장능력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석유비축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즉 동력자원부 장관은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일정규모의 석유저장능력 보유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일정량의 석유비축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저장능력의 수준과 비축수준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축의무 위반시는 비축의무 미달량에 상당하는 석유도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추징하고, 과징금은 국세

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그 금액은 석유사업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6) 기금징수 대상(제17조의 3)

석유사업기금의 징수대상에 있어서 기존의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에 석유판매업자도 기금 징수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LPG나 휘발유등이 생산되고, 세계 원료인 노말파라핀 생산과정에서 등유가 산출되는등 석유화학의 부산물로써 연료용 석유제품이 생산·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석유정제업자 및 수입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석유수입업자의 초과 이윤에 대한 기금 징수도 규정하였는데, 이는 대외개방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비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기금 징수를 함에 있어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 비율,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금의 최소 징수비율을 정부비축저장, 수송사업과 유전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으로써 유가 상승시에도 위기 대응능력을 위한 비축과 개발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기금의 용도(제17조의 4)

석유사업기금의 용도규정에 있어서는 현행 용도규정을 명확화한 것 뿐이다. 우선 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시설을 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사업으로 하여 송유관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석유소비절약, 석유대체에너지사업, 기술개발사업등을 법에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금관리운용 경비에 있어서 과거에는 순계 개념에 의하여 처리하던 것을 다른 정부기금과 마찬가지로 별호의 규정으로 명시하여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 한 경비를 명확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석유사업기금의 정부 기금화

현행 석유사업법에서의 기금관리 규정은 「기금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금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동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석유사업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그동안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던 점을 불식시키고자 한 것이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석유비축사업, 개발사업등 기금사업은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9) 석유 품질관리 강화(제18조의 2)

현재 석유사업법 제18조의 2 제2항에서 동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석유품질검사 권한을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석유품질검사 수수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품질검사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다.

(10) 상표표시제 도입

개정안은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쟁효과의 소비자 향유 및 경쟁체제 강화를 위하여 상표표시제를 법제화하였다.

새로이 신설된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석유판매업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목적으로 표시광고된 석유제품과 상이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동자부장관은 표시광고된 석유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3항에서는 석유제품의 표시·광고 기준 및 방법과 검사방법을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상표표시제란 표시광고된 석유제품과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주유소에서 한 회사의 제품을 파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회사의 기름을 파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